

2005. 1. 29(토)  
제109회임시회제5차본회의

# 제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# 제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5. 1. 18. 제천시장  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1. 20.  
다. 상 정 일 자 : 2005. 1. 24(제109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회의)

## 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건설과장 이종식)

### 가. 제안이유

2004년 3월 11일 법률 제07188호로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과 안전관리 업무협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천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기능(제2조)
  -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의 5개항목
- 위원회의 구성(제3조)
  -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  -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 : 부시장
- 위원회 실무위원회(제7조)
  - 위원회 부의안건 사전검토 및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등
  - 실무위원회 위원장 : 부시장
- 조사연구의 의뢰(제9조)
  - 필요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조사연구의뢰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최동수)

-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「법령의범위안에서」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규정.
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, 제12조 등에서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·지역별안전관리 업무의 협의·조정 등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, 제11조 제4항에서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.
- 행정절차법 제41조와 42조 등에 의거 2004년 10월 15일 입법예고 하였으며,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의 규정에 의거,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음.

#### [行政的檢討]

- 제천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과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기관간의 협의 등 관련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근거법에 의한 조례제정이나, 재난관리법 제9조에 의한 제천시 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이 기 제정되어 있으며, 안전대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이 금번 제정하는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의 내용과 대등소이한 바, 담당과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비교 분석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, 특히 위원회의 연간 운영실적 등에 대해서도 살펴 보시기 바람.
- 금번 제정하는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충북도의 시·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조례준칙안과 동일함.

### 4. 질의 답변 요지

#### 가. 질의요지

-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되는 것인가?  
(박종유 의원)

- 기구가 개편되어 1개과가 느는 것인가? (박종유 의원)
- 과가 신설되면 과내에 방재계나 민방위계가 그쪽으로 가는 것인가?  
(박종유 의원)

**나. 답변요지 (건설과장 이종식)**

- 예.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현재 인사부서에서 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음.
- 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.
- 예. 기존 재난관리계하고 자치행정과에 민방위담당, 수습대책, 복구 대책해서 4개 담당이 신설되는 걸로 되어 있음.

**5. 소 수 의 견**

“ 없 음 ”

**6. 토 론 요 지**

“ 없 음 ”

**7. 심 사 내 용**

“ 없 음 ”

**8. 심 사 결 과**

“ 원 안 가 결 ”

**9. 심사보고 붙임서류**

제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1부. 끝.